

 신안산대학교	학술연구보조금 지원 규정	규정번호 2-4-28 제정일자 2017. 4. 25. 개정일자 2024.3.20. 책임부서/팀·계 대외협력처
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게 국내 학술회의 참가 및 논문게재,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및 전시회 출품 등의 학술 연구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술활동의 활성화와 연구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경비지원) 대학회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, 세부 지원방법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에 시행되는 학술연구보조금 지원 계획에 의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) 본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(산학협력, 강의전담, 외국인, 휴직교원 제외)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지원범위) 가. 국내학술연구보조금

- ① 학회 및 학술회의 참가비(여비 포함)
- ② 연간학회비
- ③ 논문게재료 (※논문발표 시 발표자 소속이 본교임을 명시하여야 함)
- ④ 도서구입비
- ⑤ 연수교육비

나. 국제학술연구보조금

- ① 국외에서 개최하고 5개국 이상이 발표하는 국제규모 학술회의 논문발표 및 전시회 출품 (단,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, 논문발표 시 발표자 소속이 본교임을 명시하여야 함)

제5조(지원 금액) 가. 국내학술연구보조금 : 연간 1인당 30만원

나. 국제학술연구보조금 : 아시아지역 30만원, 아시아 외 지역 50만원

제6조(보조금 반환 및 지급 유예) ① 정산 시 미사용 보조금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.

- ② 정산서 미 제출시 차기년도 보조금 지급을 유예한다. (단, 미사용 보조금 반환 또는 정산서 제출 완료시 차기년도 보조금을 지급한다.)
- ③ 국제학술발표에 참석하지 못하여 결과보고서를 미제출 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7조(신청 및 정산 결과보고)

가. 신청부서 : 대외협력처 <개정 2023. 3. 30., 2024.3.20.>

나. 신청 및 정산 결과보고 제출서류

- ① 국내학술연구보조금 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
- ② 국내학술연구보조금 정산 LIST [별지 제2호 서식]
- ③ 국제학술연구보조금 신청서 [별지 제3호 서식]
- ④ 국제학술연구보조금 지원 결과보고서 [별지 제4호 서식]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